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130호

#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「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

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」

# 2. 제정이유

창원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7, FAX:055-225-4743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. 팩스. 이메일(cost403@korea.kr).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(이원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459

발의연월일: 2023. 11. 17.

발 의 의 원: 이원주·구점득·김경희·김남수·김묘정

김상현·김수혜·김혜란·남재욱·문순규 박선애·백승규·서명일·성보빈·안상우 이우완·이종화·정길상·정순욱·진형익

최은하·한은정·홍용채 의원(23명)

## 1. 제안이유

창원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#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상인"이란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상인조직"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3. "음식점"이란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·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.
  - 4. "음식특화거리"란 일정한 지역 내에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.
  - ②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 - 1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
  - 2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
  - 3. 재원 조달 방안
  - 4.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5조(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 지역(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)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수 있다.
  - 1. 거리환경,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
  - 2. 거리의 역사성,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
  - 3. 「창원시 대표음식 발굴·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표음식 취급 여부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상인 동의서(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)
  - 2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(별지 제2호서식)
  - 3.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을 포함한다) 및 명부
  - 4.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

- 5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
- 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- 1.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 집단화(아파트 상가는 제외한 다)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
- 2.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,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
- 제6조(선정)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제7조(선정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의 수가 감소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 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
  - 2. 심각한 위생,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
  - 3.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
  - 4.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- 5.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6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거나 선정을 취소할

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제8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
  - 2. 공동 마케팅,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
  - 3.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· 홍보 사업
  - 4. 음식 개발·보존·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, 품평회 등 개최 사업
  - 5.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.
  - 1.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
  - 2.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  - 3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
- 제9조(음식특화거리 사업평가)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 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0조(사업비 지원)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예산의 규모
  - 2. 사업의 특성
  -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

선청인 (상인조직 다표자)						
(상인조직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음식특화거리명 위 치(소재지) 동일한 대표 요리명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(상인조직	성 명			생년월일	(남, 여)
단체명     음식특화거리명     위 치(소재지)     동일한 대표 요리명     세정거리 음식점 수     예정거리 상인 수     신청 동의한 상인 수		주 소			전화번호	
위 치(소재지) 동일한 대표 요리명		단체명				
위 치(소재지) 동일한 대표 요리명 신청사항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					
동일한 대표 요리명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	음식특화거리명				
동일한 대표 요리명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	01 -1(2-11-1)				
신청사항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	위 지(소재시)				
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	신청사항	동일한 대표 요리명				
신청 동의한 상인 수		예정거리 음식점 수				
		예정거리 상인 수				
차워시 대표은신 취근 여부		신청 동의한 상인 수				
		창원시 대표음식 취급 여부				

「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상인조직 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# 창원시장 귀하

#### 제출서류

- 1. 상인 동의서
- 2.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
- 3.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을 포함한다) 및 명부
- 4.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
- 5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

#### 작성방법

- 1. 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2.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,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3.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는 입구 점포·출구 점포, 직선거리,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.
- 4.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, 거리 특성(환경,시설,규모,역사성 등),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.

#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###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 (필수사항)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	음식특화거리 선정	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		미동의	

### 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기간
창원시 심의	음식특화거리	성명, 생년월일,	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
	선정 심사	성별, 주소, 전화번호	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	동의		미동의	
ı				

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창 원 시 장 귀하

	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
거 리 명	신청당시 업소수
위 치 (소재지)	
선정일자	선정번호
상인조직 대표자명	전화번호
기 타 (변동·참고사항)	
	음식특화거리 사진

### 참고 관계 법령

### ■ 식품위생법

제37조(영업허가 등)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### ■ 식품위생법 시행령

제25조(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)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삭제 <2011. 12. 19.>
- 2.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
- 3. 삭제 <2011. 12. 19.>
- 4.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
- 5.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· 판매업
- 6.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
- 7. 제21조제7호의 용기·포장류제조업(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·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8.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,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